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강구덕 의원 외 11명
- 나. 의안번호 : 제1302호
- 다. 제출일자 : 2016. 8. 11
- 라. 회부일자 : 2016. 8. 16

2. 제안사유

- 동일 급지 내에 있는 노상·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설의 노후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소지가 있는 바, 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설 노후화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6조제3항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주차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16. 8. 22 ~ 2016. 8. 29
 - 제출의견 : 없음
- 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 -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) : 보류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- 가. 개 요
 -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부과하고 있는 주차요금에 공영주차장의 시설 노후도를 반영하여 주차요금을 차등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「주차장법」 제9조 및 제14조 등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¹⁾의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,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²⁾

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별표 1에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(이하 “공영주차장”이라 한다)의 주차요금을 1~5급지별로 1회주차·1일주차·월정기권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하고 있음(별첨 참고)

- 또한 현행 조례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및 별표 1 비고 등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, 저공해자동차, 전통시장 이용차량, 다동이 차량 및 승용차공동이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30%~100%에 이르는 다양한 감면제도를 적용하고 있음

-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요금에 공영주차장의 시설 노후 정도에 따라 주차요금을 차등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『주차장법』에서 주차요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문제는 없으며,

현행 조례에서는 동일 급지 내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동일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노후도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주차서비스 차등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면이 있음

- 다만, 서울시 전체 공영주차장 145개소 중에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은 17개소(11.7%)에 불과하고, 공영주차장의 시설 노후화 정도를 규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, 별표 1에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실정에 따라 50%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조정³⁾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음

- 한편 현행 조례에서 5개 급지별로 부과하고 있는 주차요금 정책과 관련하여 주

1) 『주차장법』 제2조(정의) 가. 노상주차장(路上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(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. 이하 같다)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(一般)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나. 노외주차장(路外駐車場):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

2) 제9조(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14조(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) 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.

3) <비고> 4. 시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%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.

차요금은 '97년 이후, 5개 급지는 '09년 이후 고정되어 있음에 따라 그 동안 변화된 교통 및 사회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주차요금 및 금지정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⁴⁾

용역결과 발표 이후 동 조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주차요금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

[별 첨]

공영주차장 요금표(현행 조례 제6조제1항 관련) (단위 : 원-1구획당)

구 분	노 상 주 차 장				노 외 주 차 장		
	1회주차시 5분당	1일주차권 (야간에한함)	월 정 기 권		1회주차시 5분당	월 정 기 권	
			주 간	야 간		주 간	야 간
1급지	500	5,000	-	-	400	250,000	100,000
2급지	250	4,000	-	-	250	180,000	60,000
3급지	150	3,000	-	-	150	100,000	40,000
4급지	100	2,000	50,000	-	100	환승목적주차시 40,000	20,000
						기타 50,000	
5급지	50	1,000	30,000	20,000	50	30,000	20,000

※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·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정기권요금은 4만원으로 함.

4) 서울시 주차요금 및 금지정책 개선방안 연구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('15.7, 주차계획과-9586)